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16
------------	-------

발의연월일 : 2019. 1. 30.

발 의 자 : 김상희 · 윤일규 · 기동민
고용진 · 윤소하 · 정춘숙
한정애 · 서영교 · 정인화
인재근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질병 규명 등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연구목적의 시체 해부는 의사 등 시체 해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과대학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할 뿐, 시체 조직의 연구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의학 연구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임.

이에 시체 조직을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4호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연구목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을 두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타인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그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8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시체의 제공 등)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일부(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9조의3,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8호에서 같다)를 연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과대학 및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승인 절차, 승인 취소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

2.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절차의 표준 마련
 3.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운영 및 지원
 4.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해부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수집, 관련 통계 산출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연구목적의 해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6조제1항 중 “보존하려는”을 “보존하거나 시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으로 한다.
- 제1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보존한 자”를 “보존하거나 시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로 한다.
4.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관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9조의2(시체의 제공 등)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일부(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9조의 3,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8호에서 같다)를 연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연구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과대학 및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승인 절차, 승인 취소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신 설></u>	<p>제9조의3(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p>

<p>제16조(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의과대학의 장,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p>	<p>에 따른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2.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절차의 표준 마련3.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 받은 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운영 및 지원4.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해부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수집, 관련 통계 산출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연구목적의 해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16조(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 -----</p>
---	--

<p>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本으로 <u>보존하려는</u>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 ----- ----- ----- ----- <u>보</u> <u>존하거나 시체의 일부를 타인에</u> <u>게 제공하려는-----</u> -----.</p>
<p>② (생 략)</p> <p>제19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별 칙) ----- ----- ----- -----.</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관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u></p>
<p>4. ~ 6. (생 략)</p> <p>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u>보존한 자</u></p>	<p>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8. ----- ----- ----- <u>보존하거나 시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u></p>